

# 검토보고서

안건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광과

( 2016. 12. 6 )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은모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11월 23일(수)
- 제출자 : 강희향 의원 외 7명

##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4일(목)

##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 「관광진흥법」 제48조의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장 등의 인증)
-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제정이유 >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가 마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로 마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돋고 관광 마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시행하여 관광마포의 이미지 향상 및 마포구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해설사 자격 및 직무에 관한 규정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해설사 선발, 해설사증 발급과 해설사에 대한 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제9조)

라. 예산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해설사 활동비

-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해설사 상해 보험료 등

-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면제

마. 해설사 배치 시 반영 및 제외 사항(안 제11조)

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한 표창 근거 마련(안 제12조)

사.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안 제13조)

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4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마포의 역사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돋고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국제관광도시로서 마포의 위상을 향상시킴은 물론 마포구의 관광 진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同) 조례는 제1조 목적부터 제14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14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해설사 자격 및 직무에 관한 규정 근거 마련
  - 안 제6조 ~ 제9조에서는 해설사 선발, 해설사증 발급과 해설사에 대한 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6조는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해설사 활동비 등 예산의 지원 근거 마련
  - 안 제11조는 해설사 배치 시 반영 및 제외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한 표창 근거 마련
  - 안 제13조는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마련
  - 안 제14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동(同)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안내와 이해를 돋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올바른 역사와 문화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구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문화를 소개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우리 구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 동(同) 조례안은 2016.11.25.~11.30.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매년), 해설사 자격 및 직무, 해설사 선발 및 해설사증 발급과 해설사에 대한 교육 및 해설사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해설사 활동비 등 예산의 지원 근거, 해설사 배치 시 반영 및 제외 사항 및 우수한 해설사 표창 근거, 해설사 선발 및 교육 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향후 관광마포의 이및 향상 및 마포구 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 마포관광 관련 담당부서에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우리 구는 2천만 외래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2015. 7. 7. 마포 관광발전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업무추진 계획을 시달한 바 있고, 현재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마포구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홍대 주변 공연관광 활성화, MBC 등 연계한 DMC 활성화 및 마포 양화진 성지 순례 등 유·무형 문화 관광 자원을 스토리텔링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마포관광 활성화 계획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이 계획의 일환으로 공덕동, 용강동, 상암동 등 관광활성화 거점 간 마포 테마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관광객을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가 테마관광지를 안내하여 마포를 알리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통비 등 활동비 및 해설 장비 등 구입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우리 구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전문적인 문화관광해설사가 국·내외 관광객에게 직접 마포구의 역사, 문화 관광 명소인 광흥당 전통 혼례식,

공민왕 사당제 등 전통문화 행사와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양화진 근대사 뱃길 탐방,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경의선 숲길 및 경의선 책거리, 하늘공원 억새풀 축제, 월드컵경기장 등 유·무형 문화재 그리고 한류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MBC방송국 DMC 한류문화컨텐츠 체험관, K-POP을 이끌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흥대 B-BOY 등 마포구의 역사, 문화와 전통 등을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객에게 직접 안내하고 올바르게 알림으로써 한류관광의 명소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마포구 관광해설사가 마포구를 한번 찾은 관광객이 다시 찾을 올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여 마포구 지역경제 살리기와 마포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관광진흥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58호, 2016.2.3., 일부개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8조의6(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認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인증의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돋기 위하여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